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7 선고 2019가단5583(본소), 2019 가단6180(반소) 판결 [(본소)
물품대금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A 주식회사

B

변론 종결 2020. 1. 17

판결 선고 2020. 2. 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2,216,3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42,216,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D은 2016. 12. 7. 파주시 E 외 3필지상 공장의 건축 주로서 건축신고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공장 신축공사를 299,200,000원에 도급 주었으며, 2017. 5. 4.경 착공예정일을 같은 해 5. 6.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나. D은 2017. 11. 14.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27. 피고의 요청으로 파주시 E에 지붕판넬 260T, 벽체판넬 150T 외 후레싱 등을 납품하면서 피고로부터 대금 59,4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18. 2. 13.에 10,000,000원, 같은 해 3. 16.에 5,0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17,183,698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4, 9,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42,216,302원(= 59,400,000- 17, 183, 698)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5. 17.부터 2019. 5.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본소청구에 대한 피고의 항변 및 반소 청구에 대하여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물품을 공급받아 C의 공장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였는데 피고가 2017. 11. 14. C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C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18. 2. 13. 및 같은 해 3. 16.의 지급금을 합하여 총 65,000,000원을 지급한 것이어서 위 물품대금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반소로 초과로 지급된 5,600,000원(= 65,000,000- 59,400,000)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먼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27. 위 물품을 납품받기 전인 같은 해 11. 14. C으로부터 지급받은 50,000,000원이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판결 참조).

피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합계 65,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중 5,600,000원 부분에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은 피고가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박지원